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4.

발 의 자 : 김용태 · 서천호 · 김예지
고동진 · 조은희 · 김대식
이성권 · 조지연 · 서지영
김승수 · 강명구 · 김장겸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,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, 상담,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한 조력인을 지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국내 초·중·고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아동 등의 이주배경학생이 급증함에 따라, 이들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과거 살았던 국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사건에서 학생의 진술권 보장 및 소명 기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.

또한, 재외국민의 학교교육을 위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와 같이 현지 법령 체계, 지리적 여건, 인프라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가해학생에

대한 법정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사례가 존재하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됨.

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사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객관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,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 16조의5 신설 등).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3제1항 중 “보호”를 “보호, 통역 및 번역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5(외국인학생 등에 대한 통역 및 번역 지원)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외국인학생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(이하 “외국인학생등”이라 한다)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·상담 및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외국인학생등인 경우 심의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대통령령으로”를 “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의3(피해학생 지원 조력인)</p> <p>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, 상담,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 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(이하 “피해학생 지원 조력인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6조의3(피해학생 지원 조력인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보 <u>호, 통역 및 번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6조의5(외국인학생 등에 대한 통역 및 번역 지원)</u>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외국인학생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(이하 “외국인학생등”이라 한다)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·상담 및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통역 및</p>

